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며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될 경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가 온열질환에 걸리면 의식을 잃거나 고열, 두통, 근육경련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유해요인이지만, 아직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업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시원하고 깨끗한 물

폭염에는 노동자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손실이 일어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 장소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 ‘그늘’과 ‘바람’

옥외작업의 경우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내작업의 경우,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해서 온도가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작업하는 곳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환기를 취하도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구분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	실내작업장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그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해 일정 수준 이내 유지 •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 환기 조치 •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야간작업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절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조치한다. 야간작업의 경우에도 적절한 실내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폭염 시 근무시간대 조정 등 휴식 강조

폭염에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을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휴식을 부여하고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근무시간대 조정, 근무 강도·근무량 조정, 노동자 건강 상태 체크 등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필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119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평소에 노동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폭염 시 업무로 인한 온열질환도 「산재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에 이르렀다.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직장 복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